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추가협상 동향과 시사점*

이 주 명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1. 필리핀 쌀 관계와 추가 유예 협상의 배경과 경과

1.1. 협상 배경

최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필리핀의 쌀 관세화 3차 유예를 위한 의무면제(waiver)¹⁾ 협상이 농업분야의 중요 이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14년 말로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추가 유예협상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농산물도 “관세화 원칙”에 따라 개방되었으나, 우리나라와 필리핀, 일본은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 수입물량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일본은 1차 관세화 유예 종료기간 전인 1999년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첨부에 따라 계산된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²⁾로

* (leejm34567@gmail.com).

1) 국제경제조약에 의해 설치된 감독기관(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이 가입국에 대해 부여하는 일반적인 의무면제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영어의 waiver에는 그것 이외에(권리의) 포기라는 의미도 있으며, 그것은 국제법상의 일반적 행위의 하나이다. 가트에 의하면 체약국단(締約國團)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트에 의해 체약국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체약국단의 2/3의 다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가트 25조 5항). WTO 협정은 이 의결요건을 3/4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의무면제의 결정에는 조건과 기한을 제시하고, 매년 각료회의의 심사를 받을 것을 결정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WTO 협정 9조).

2)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약속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것임.

쌀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10년간의 1차 관세화 유예가 종료 되는 2004년에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에 의거 추가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2차 유예한 바 있다. 7년 간 2차 유예를 한 필리핀의 2차 관세화 유예는 2012년 6월 30일 이미 종료되었으며, 10년 간 2차 유예를 한 우리나라는 2014년 말까지 아직 약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2년에 WTO에 가입한 대만은 2002년 1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한 후 국내 논의를 거쳐, 쌀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에 쌀 관세화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쌀 농가의 영세성, 식량부족 상황 등을 고려, 3차 추가 유예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 국가별 쌀 관세화 유예 현황

		필리핀	한국	일본	대만
특별대우 (1차)	기간	10년('95~ '04)	10년('95~ '04)	6년('95~ '00)	1년('02)
	MMA	60~239천 톤	51~205천 톤	426~852천 톤	144천 톤
	세율	50%	5%		0~25%
특별대우 (2차)	기간	7년('05~ '12)	10년('05~ '14)	* '99년 조기관세화	* '03년 관세화
	MMA	350천 톤	225~409천 톤		
	세율	40%	5%		
의무면제 (waiver)	기간	5년('12~ '17)			
	MMA	350~805천 톤			
	세율	35%			

* 필리핀의 관세화 추가 유예를 위한 의무면제 협상 진행 중.

1.2. 협상 경과

1.2.1. 농업위원회의 협상개시 의사 표명(2011.11.22)

2011년 11월 17일 제64차 농업위원회 정례회의 시 필리핀은 회원국들에게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의사를 표명하였다. 동 회의 시 필리핀은 2004년도 쌀 협상 당시 WTO/DDA 협상이 조기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7년(2005.7~2012.6)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쌀 관세화를 2차로 유예한 바 있으나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식량수급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소규모 쌀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 확보 등

을 위해 3차 유예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2011년 11월 22일 관세화 추가 유예를 위한 협상개시 통지문³⁾을 WTO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회람하였다. 동 통지문에서 필리핀은 자국 쌀 수정 이행계획서 5의 1조⁴⁾를 추가 유예 근거로 제시하고, 2012년 2월 22일까지 관심 있는 회원국들의 양자 협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 2012년 2월 22일까지 협상참가를 신청한 국가는 미국, 중국, 태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호주, 엘살바도르, 캐나다 등 9개국이었다. 이들 협상 참여 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는 실질적으로 필리핀의 쌀 시장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필리핀은 이들 9개국과 2012년 초부터 비공식 양자협의를 개시하였다.

상기 비공식 양자협의 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⁵⁾에 의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필리핀은 2005년 2차 유예 시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추가 연장은 불가하며, 필리핀이 추가 유예의 근거로 제시한 쌀 수정 이행계획서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1.2.2. 상품무역이사외에 의무 면제 안건 상정(2012.3.30)

이에 따라, 필리핀은 2012년 3월 30일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자국의 쌀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기 위해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을 포기하고,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제9의 3조에 근거하여 의무면제(waiver)를 요청하였다.

필리핀은 동 의무면제 요청서⁶⁾에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은 특별대우 연장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는 미국, 호주 등 일부 회원국의 주장에 따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무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의무면제 기간을 5년(2012.7~2017.6)으로 제시하고 동 기간 중 의무수입물량(Minimum Market Access, MMA) 증량 수준 및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하, 국가별 쿼터 등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에 따라 공란으로 제출하였다.

이후 필리핀측은 2012년 6월 30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개최된 2012년

3) WTO 문서 G/AG/W/91 참조

4) WTO 문서 G/MA/TAR/RS/99/Rev.1. (para 5.1) Any continuation of special treatment for rice shall be contingent on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In case the special treatment ceases to app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the tariff rate shall be modified to reflect such an outcome.

5) 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 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 기간 개시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 범위 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6) WTO 문서 G/C/W/665.

6월 22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의무면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추가 협상기간 부여를 요청하였다.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은 WTO 협정 9의 3조⁷⁾에 의거 2012년 7월 25일 개최된 일반이사회에 필리핀 쌀 의무면제 협상경과를 보고하였고, 일반이사회 의장은 추가 협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필리핀은 2012년 11월 26일 개최된 상품무역이사회를 앞두고 본부 대표단이 1주일 전부터 상주하면서 집중 협상을 통해 쌀 관련 보상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미국, 호주, 캐나다와 쌀 이외 보상에 대한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타결에 실패하였다.

다만, 이때 필리핀측이 상정한 의무면제 요청 수정안⁸⁾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로, 의무면제 기간 중에 필리핀이 약속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관세화 한다는 규정과, 5년간의 의무면제 이후에는 농업협정 부속서 5의 10항에 의거 추가 유예 없이 관세화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25일 상품무역이사회, 2013년 7월 11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쌀 이외 보상안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타결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2013년 7월 11일 상품무역이사회 시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쌀 관심국들은 이미 쌀 관련 보상이 합의되었음에도 미국 등의 합의 지연으로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를 촉구하였고, 미국, 캐나다 등도 필리핀 측에 이미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나 경과되었다며 필리핀 측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1.2.3. 상품무역이사회(2013.10.18.)

필리핀은 지난 10월 1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의무면제 요청 안건⁹⁾에 쌀 의무수입 물량, 쿼터 내 관세율 인하, 국별 쿼터 등 자국의 쌀 관련 양허안을 제시하였다. 필리핀이 쌀 관련 양허안을 공개한 것은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합의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이들 쌀 이외 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위한 고려도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동 10월 18일 상품무역이사회 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쌀 관심국들은 쌀 이외 보상 지연으로 자국들의 필리핀 쌀 시장 접근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하였다.

10월 18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쌀 이외의 보상 합의가

7) WTO 협정 9.3(b) 하단 : 상품무역이사회는 의무면제 협상 결과를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8) WTO 문서 G/C/W/665/Rev.1.

9) WTO 문서 G/C/W/665/Rev.2(국별 쿼터 미포함) 및 G/C/W/665/Rev.3.

지연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동 회의 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미 합의 국가들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는바, 거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필리핀 쌀 관세와 추가 유예의 법적 근거 문제

2.1. 농업협정 부속서 5조 8항 및 필리핀 이행계획서 5의 1조

협상초기 필리핀은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 및 자국의 쌀 이행계획서 수정양허표 제 5의1조(G/MA/ TAR/RS/99 /Rev.1&WT/Let/562)를 관세화 추가 유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측이 협상 초기 비공식 양자협의 시에 미국, 호주, 캐나다, 파키스탄, 태국 등 대다수 협상 참여국들이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8항과 필리핀의 수정양허표 제 5의 1조는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호주 등은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은 그 문맥 취지상 1회만 유예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미 필리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유예 시 동 규정을 사용하였으며, 필리핀의 쌀 관세화 수정 이행계획서는 DDA 타결 시 관세율 수정에 관한 것이며, 이행 계획서 자체가 추가 유예의 법적근거는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주요한 논지다. 어쨌든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을 활용한 관세화 추가 유예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표 2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

- | |
|---|
| <p>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 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 범위 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p> <p>8. Any negotiation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can be a continu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 as set out in paragraph 7 after the end of the 10th year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initiated and completed within the time-frame of the 10th year itself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p> |
|---|

표 3 필리핀 쌀 수정 이행계획서 5의 1조

- ◆ (5.1조) 쌀에 대한 특별대우가 지속될지 여부는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DDA 협상 결과가 발효한 이후 특별대우가 종료될 경우, 관세율은 DDA 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 ◆ (para 5.1) Any continuation of special treatment for rice shall be contingent on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In case the special treatment ceases to app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the tariff rate shall be modified to reflect such an outcome.

2.2. WTO 협정 9의 3조에 의한 의무면제

필리핀은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의 근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WTO 협정 9의 3조에 근거한 의무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표 4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제9.3조

- 9.3. 예외적인 상황에서 각료회의는 이 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지우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 9.3.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Ministerial Conference may decide to waive an obligation imposed on a Member by this Agreement or any of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provided that any such decision shall be taken by three fourths of the Member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paragraph.

WTO 협정상의 의무면제는 WTO 체제하에서 모든 회원국의 부담해야 하는 특정 의무를 특별한 사유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의무면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협상이다.

아울러 의무면제를 받는 경우, 동 의무면제 종료 시까지 매년 WTO 일반이사회에서 의무면제 필요성 및 약속된 양허의 제공 여부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 만약 어느 회원국이라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필리핀이 약속된 양허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관세화 유예는 종료되게 된다.

필리핀도 이러한 의무면제 협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을 다시 활용하여 협상대상을 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로 제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3. 필리핀 쌀 관세와 5년 추가 유예의 대가

3.1. 쌀 관련 보상

지난 2013년 10월 1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은 쌀과 관련하여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쌀에 대한 의무수입물량(Minimum Market Access, MMA)을 현재의 2.3배로 증량하고(350천 톤 → 805천 톤), 의무수입물량의 수입 관세율도 인하하였으며(40% → 35%), 협상참여국 중 국가별 쿼터를 희망한 호주·중국·인도·파키스탄·베트남·엘살바도르 등 6개국에게 국가별 쿼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표 5 필리핀의 쌀 관세 추가 유예 관련 쌀 양허안¹⁰⁾

구분	' 12.7.1~' 13.6.30	' 13.7.1~' 14.6.30	' 14.7.1~' 17.6.30	
물량(톤)	350,000	645,134	805,200	
관세율(%)	40	40	40-35	
국가별쿼터(톤)	호주	15,000	15,000	15,000
	중국	25,000	40,000	50,000
	엘살바도르	-	4,000	4,000
	인도	-	40,000	50,000
	파키스탄	-	40,000	50,000
	베트남	-	228,067	293,100
	태국	98,000	-	-

* 필리핀은 2차 관세화 유예기준, 의무수입(350,000톤), 세율 40% 등 의무 부담.

3.2. 쌀 이외 보상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쌀 이외 보상 관심국가들은 협상 초기부터 필리핀의 쌀 시장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협상 초기부터 필리핀에 대한 육류 관세인하 및 검역장벽 완화 등 필리핀 국내적으로 민감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들¹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필리핀이 자국의 민감성을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협상 타결이 지연되었다.

10) WTO 문서 G/C/W/665/Rev.3

11) US opposes Philippines' appeal to limit rice imports at WTO(Philippine Daily Inquirer, 2012.2.23), Philippines: US Linking Rice import Deal to Frozen Meat Standard(ICTSD 2012.2.29.) 등.

4. 필리핀 쌀 관세와 협상 상황 평가 및 전망

4.1. 필리핀이 쌀 관세와 유예 협상을 추진한 이유

필리핀은 현재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을 포함하여 연간 100 ~20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필리핀이 의무수입량을 약 80만 톤 수준으로 늘리더라도, 여전히 연간 전체 수입량 범위 내에 있어서, 의무 수입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필리핀에서도 쌀이 중요한 정치재로서, 소규모 쌀 생산농가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필리핀 국내적으로는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는 것에 대해 이견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표 6 필리핀 쌀 수급상황

단위 : 천 톤 %

구 분	생 산(a)	수 입	수 요(b)	연말재고	자급률(a/b)
2008	10,997	2,432	12,961	2,639	84.8
2009	10,633	1,755	12,398	2,629	85.8
2010	10,315	2,378	11,898	3,424	86.7
2011	10,911	707	12,415	2,627	87.9

자료: (www.bas.gov.ph/publication/Selected Statistics on Agriculture 2012).

4.2. 필리핀의 쌀 관세와 유예 협상 대응체계

필리핀은 농림부 차관이 협상을 총괄하였으며, 필리핀 본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 9개국의 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품무역이사회 개최 계기에 제네바를 방문하여 각국 대표단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초기부터 협상 참여국들이 쌀 킬터 물량 과다 요구 및 관세율 대폭 인하 등을 요구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자국에 대한 국가별 킬터 100만 톤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쌀 이외 보상을 요구한 국가들은 협상 초기부터 필리핀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로 필리핀 측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러한 요구에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상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구

축 및 대응이 절실하였으며, 필리핀측도 초기에 일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협상대응을 체계화하였다.

4.3. 필리핀의 양우 쌀 협상 전망

필리핀은 2012년 6월 30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WTO 협정 위반상태이며, 동 유예기간 종료 이후 1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협상 참여국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어떤 회원국이라도 분쟁 등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분쟁에서 패소하는 등 필리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2013년 10월 18일 상품무역이사회 직후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 입장 유보국가들과 추가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협상 추진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임시회의나 내년 2~3월에 개최되는 상품무역이사회 정례회의시에 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5. 필리핀의 쌀 의무면제 협상 시사점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쌀 관세화 추가 유예를 위한 의무면제 협상은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5.1.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은 관세와 재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세화 추가유예 가능성과 관련하여,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을 활용한 추가유예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

5.2. 관세와 외에 의무면제를 받을 경우 우리나라도 일시적인 추가 유예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일시 유예를 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함

필리핀 사례를 통해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우리나라에게도 의무면제를 통한 관세화 추가 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 사례를 볼 때, 의무면제를 통한 추가 유예는 일시적(5년)이며, 의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하며, 상당한 대가 제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의무면제를 추진할 경우, 필리핀보다 경제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쌀 및 쌀 이외의 다양한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다. 필리핀 측에 따르면, 필리핀의 쌀 의무면제 협상과정에서 미국, 호주, 태국 등 협상참여국들은 우리의 쌀 관세화 여부에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5.3. 쌀 관세와 유예기간 종료 이유, "Stand-Still"이 가능한가

현재 일각에서 UR 이행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새로운 협정문을 만드는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원국들은 종료된 이행기간¹²⁾에 맞추어 개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말 이후에도 쌀 관세화를 하지 않고 현재의 의무수입량을 유지하는 "현상유지(Stand-Still)"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필리핀 쌀 의무면제 협상 사례를 통해 명확해졌다. 필자가 필리핀 대표부 쌀 협상 농무관에게 상기 "Stand-Still" 관련 주장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필리핀측은 그러한 주장이 가능하다면 필리핀이 왜 이 어려운 의무면제 협상을 추진하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필리핀과 한국의 쌀 관세화 의무는 UR 협상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WTO 농업 협정상에서 관세화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DDA 타결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 농무관은 한국으로서는 2014년 말 이후에 쌀에 대해 관세화와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의무면제 협상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하였다.

5.4.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 관련 여건 차이

필리핀이 3차 유예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는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여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리핀은 연간 100~20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의무 수입량을 지난 10월 18일 상품무역이사회 시 발표한 것과 같이 약 80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더라도, 연간 수입량 범위 내에 있어서 국내 쌀 생산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12) WTO 농업협정에 의거, 선진국의 이행기간은 1995 ~ 2000, 개도국의 이행기간은 1995 ~ 2004임.

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량은 2014년 말 기준으로 409천 톤 수준이며, 동 의무수입량은 우리나라가 2014년 말 이후 관세화 하더라도 계속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 의무 수입량 외에는 쌀을 수입하지 않고, 자급하고 있는바, 의무 수입량을 확대할 경우, 그 만큼 국내 쌀 생산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6. 결어

201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쌀을 WTO 농업협정에 따라 관세화할지, 아니면 필리핀의 사례를 따라 일시적인 추가 유예를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가 있다. 그동안 국민 식생활 구조가 변화하면서 연간 1인당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또한 농가 소득구조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식량안보 확보에 기본 가치를 두면서, 우리나라의 쌀 산업과 농가소득 및 소비자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WTO 문서 G/AG/W/91(필리핀의 쌀 협상 개시 통지문).

WTO 문서 G/MA/TAR/RS/99/Rev.1(필리핀 쌀 수정이행계획서).

WTO 농업협정.

WTO 설립에 관한 마라케시 협정.

WTO 상품무역이사회 문서 G/C/W/665 및 G/C/W/665/Rev.1~3.

필리핀 농업통계 웹사이트 : [www.bas.gov.ph/publication/Selected Statistics on Agriculture 2012](http://www.bas.gov.ph/publication/Selected%20Statistics%20on%20Agriculture%202012).

Philippine Daily Inquirer, 2012.2.23(US opposes Philippines' appeal to limit rice imports at WTO).

ICTSD 2012.2.29(Philippines: US Linking Rice import Deal to Frozen Meat Standard).